2022년도 제5차
재무경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심의사항

○ 제16호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5

○ 제17호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1

○ 제18호 인천대학교 강사 임금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17

○ 제19호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추진 계획안 ····· 23

○ 제20호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 37

○ 제21호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59

○ 제22호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 65

○ 제23호 2022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3

《 별책자료 》

◦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의안 번호	제2022 - 16호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송다영
제출년월일	2022. 8. 18.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 안 번 호	2022-16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22.6.10.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직 명칭을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6]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의 지급대상에 ‘부처장’ 추가, ‘융합과학기술원장’ 삭제,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국제교류원장’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 2022. 7. 18. (월)
- 교무회의 보고 : 2022. 7. 19. (화)
- 총장방침 : 2022. 7. 20. (수)
- 의견조회 : 2022. 7. 21. (목) ~ 7. 27. (수)
- 사전심사 : 2022. 7. 28. (목) ~ 8. 3. (수)
- 재무경영위원회 : 2022. 8. 18. (목)

지침 제 호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제12조 관련)

지급대상		비 고
부총장		
처장, 본부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에 한함.
부처장		
부속기관장	‘가’ 급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원 트라이버시티 원장, 생활원장, 창업지원단장, 중국학술원장, 기초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취업경력개발원장, 성과평가원장, 연구혁신원장, 국제교류원장
	‘나’ 급	그 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센터장		
학과(부)장	교원 10인 이상	
	교원 9인 이하	
전공주임 교수	학부	동북아통상학부 및 조형예술학부는 제외함.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리더십전공, 교수설계・교육미디어전공, 교육과정・수업컨설팅전공, 상담심리전공, 창의성・영재교육전공 에 한함.

※ 보직수당 총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6]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제12조 관련)

지급대상		비 고
부총장		
처장, 본부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에 한함.
부속기관장	‘가’급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원장, 생활원장, 창업지원단장, 중국학술원장, 융합과학기술원장, 기초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취업경력개발원장, 성과평가원장, 연구혁신원장
	‘나’급	그 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센터장		
학과(부)장	교원 10인 이상	
	교원 9인 이하	
전공주임교수	학부	동북아통상학부 및 조형예술학부는 제외함.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 리더십전공, 교수설계 · 교육미디어전공, 교육과정 · 수업컨설팅전공, 상담심리전공, 창의성 · 영재교육전공 에 한함.

※ 보직수당 총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개 정 안

[별표6]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제12조 관련)

지급대상		비 고
부총장		
처장, 본부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에 한함.
부처장		
부속기관장	‘가’급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원장**, 생활원장, 창업지원단장, 중국학술원장, ~~융합과학기술원장~~, 기초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취업경력개발원장, 성과평가원장, 연구혁신원장, **국제교류원장**
	‘나’급	그 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센터장		
학과(부)장	교원 10인 이상	
	교원 9인 이하	
전공주임교수	학부	동북아통상학부 및 조형예술학부는 제외함.
	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 리더십전공, 교수설계 · 교육미디어전공, 교육과정 · 수업컨설팅전공, 상담심리전공, 창의성 · 영재교육전공 에 한함.

※ 보직수당 총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의안 번호	제2022 - 17호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송다영
제출년월일	2022. 8. 18.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안 번 호	2022-17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22.06.10.자「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책임시간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기존 감면대상 중 중복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평의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인지원팀의 평의원회 총무의 책임시간 감면 요청에 따라 책임시간 감면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직교수 책임시간 감면대상 신설・변경 및 삭제(안 별표)

구 분	책임시간(주당)	내 용
부처장	6	신 설
한국어교육센터장		
외국어교육센터장		
INU그레이트북스 센터장		
대학생활상담센터장		‘학생생활상담소장’ 명칭 변경
공자학원장		삭 제 (감면대상 중 ‘부속기관장’에 포함)

나. 책임시간 감면대상 중 평의원회 총무 신설(안 별표)

○ 평의원회 + 전체교수회 적용 총원 제한 유지(5인)

구분	기존	변경	책임시간(주당)	비고
평의원회 전체교수회	평의원회의장 전체교수회 회장	(현행과 같음)	3	5인 이내
	평의원회 부의장 전체교수회 부회장・사무국장・정책국장	**평의원회 부의장・총무** ----------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관리지침」

나. 추진일정

○ 총장 방침 : 2022. 7. 21.(목)

○ 의견 조회 : 2022. 7. 22.(금) ~ 7. 28.(목)

○ 사전 심의 : 2022. 8. 04.(목)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 8. 18.(목)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2. 8. 30.(화) 예정

○ 평의원회 심의 : 2022. 9월 중

규정 제 호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책임시간 감면대상	책임시간 (주당)	비 고
보직교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본부장	3	
	대학원 부원장 대학 부학장 부처장 학과(부)장, 전공주임 (계약학과 제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대학생활상담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교육혁신센터장 성과관리·인증센터장 창의융합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한국어교육센터장 외국어교육센터장 INU그레이트북스 센터장	6	
평의원회 전체교수회	평의원회의장 전체교수회 회장	3	5인 이내
	평의원회 부의장・총무 전체교수회 부회장・사무국장・정책국장	6	
법인이사회 임원	법인이사회 이사	6	
인천대 발전기금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4.5	
기 타	정년퇴임 1년전(2개학기) 해당교수 출산 여교수(당해학기 또는 직전(후) 1개학기)	3	
	신규임용교원(첫학기)	6	
	전환 연구중점교수(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7.5	

부 칙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보직교수 및 기타 책임시간 감면교수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책임시간 감면대상	책임시간 (주당)	비고
보직교수	(생략)	3	
	대학원 부원장 대학 부학장 <신 설> 학과(부)장, 전공주임 (계약학과 제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학생생활상담소장 사회봉사센터장 공자학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성과관리·인증센터장 창의융합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신 설> <신 설> <신 설>	6	
평의원회 전체교수회	(생략)	3	5인 이내
	평의원회 부의장 전체교수회 부회장 · 사무국장 · 정책국장	6	
법인이사회 임원	(생략)	6	
인천대 발전기금	(생략)	4.5	
기타	(생략)	3	
	(생략)	6	
	(생략)	7.5	

개 정 안

[별표]

(현행과 같음)

구분	책임시간 감면대상	책임시간 (주당)	비고
보직교수	(현행과 같음)	3	
	대학원 부원장 대학 부학장 **부처장** 학과(부)장, 전공주임 (계약학과 제외)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대학생활상담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삭 제>** 교육혁신센터장 성과관리·인증센터장 창의융합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한국어교육센터장** **외국어교육센터장** **INU그레이트북스 센터장**	6	
평의원회 전체교수회	(현행과 같음)	3	5인 이내
	평의원회 부의장 · 총무 전체교수회 부회장 · 사무국장 · 정책국장	6	
법인이사회 임원	(현행과 같음)	6	
인천대 발전기금	(현행과 같음)	4.5	
기타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5	

의안 번호	제2022 - 18호

인천대학교 강사 임금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송다영
제출년월일	2022. 8. 18.

인천대학교 강사 임금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 안 번 호	2022-18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국내 4년제 대학 및 국공립대학 평균대비 낮은 우리대학 강사의 강의료 인상을 통하여 강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의료 지급 기준액 변경(안 별표)

구 분	지급기준액	
	기 존	변 경
지급 기준액	61,000원	66,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

나. 추진일정

○ 총장 방침 : 2022. 7. 21.(목)
○ 의견 조회 : 2022. 7. 22.(금) ~ 7. 28.(목)
○ 사전 심의 : 2022. 8. 04.(목)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 8. 18.(목)

지침 제 호

인천대학교 강사 임금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강사 임금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산정주수 및 지급 기준액 (제4조 관련)

1학기		2학기		지급 기준액
기간	산정주수	기간	산정주수	66,000원
3월~5월	각 4주	9월~11월	각 4주	
6월	3주	12월	3주	
7월~8월	하계방학	1월~2월	동계방학	

※ 계약학과의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월별 산정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월별 산정주수 및 지급 기준액 (제4조 관련)

1학기		2학기		지급 기준액
기간	산정주수	기간	산정주수	
3월~5월	각 4주	9월~11월	각 4주	61,000원
6월	3주	12월	3주	
7월~8월	하계방학	1월~2월	동계방학	

※ 계약학과의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월별 산정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월별 산정주수 및 지급 기준액 (제4조 관련)

1학기		2학기		지급 기준액
기간	산정주수	기간	산정주수	
3월~5월	각 4주	9월~11월	각 4주	**66,000원**
6월	3주	12월	3주	
7월~8월	하계방학	1월~2월	동계방학	

※ 계약학과의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함.

※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월별 산정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제2022 - 19호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추진 계획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나인수
제출년월일	2022. 8. 18.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추진 계획안

의 안 번 호	2022-19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1. 제안사유

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 및 거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추진

나. 타 지역 출신 학생 증가와 근거리 주거시설(자취 및 하숙 등) 부족 및 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교내 기숙시설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개요

- 사업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규모 : 900명 내외(1인실 30%, 2인실 70%)
- 사업위치 : 교내 제2기숙사 부근(테니스장 포함 건물배치 검토)

위 치	전 경
㉠ 기존 3개 기숙시설과 집적화 배치로 효율적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화 도모 ㉡ 대상지 일부(3,880㎡)가 녹지로 해제 필요 (경제청, 환경청 등과 협의)	

- 사업기간 : 2023.01. ~ 2025.08.(설계 및 공사추진)
- 건립재원 : 약 430억 원(사학진흥기금 100%)

※ 2022년도 기숙사 경쟁률 1.3:1(3,972명 신청 / 3,076명 모집)

나. 추진사항

- 2021.10.~11. :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인천대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며, 향후 **학교 측 비용부담 없음**
  - 장래수요는 타 대학 수요포함 **1,000명 충족**할 것으로 예상
  -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SPC 사업성 확보** 가능
  - **학생 정주환경 개선, 학교 장래 발전 측면 등 유치 적정성 확보**
- 2022.06. : 행복기숙사(연합) 교통관련 협의(인천대-경제청)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예정지 녹지 해제 논의(인천대-한강유역환경청)
- 2022.07.13. : 행복기숙사(연합) 추진사항 논의(인천대-사학진흥재단)
- 2022.07.25. : 본부회의 보고
- 2022.08.04. : 행복기숙사(연합) 추진사항 논의(인천대-사학진흥재단)
- 2022.08.09. : 교무회의 보고

다. 향후 추진일정

- 2022.08.30.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2.09. : 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 2022.10.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심의
- 2022.12. : 인천대학교-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협약 체결
- 2023.01. ~ 08. :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 2023.09. ~ 2025.08. : 건설 및 준공
- 2025.09. : 행복기숙사(연합) 운영

붙임 1.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사업 계획 1부
2. 행복기숙사와 BTL 기숙사 비교 및 조세 검토 1부
3. 행복기숙사(연합) 유치 관련 출장 결과보고 공문 1부. 끝.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사업 계획

□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이란?

○ **(정의)** 유휴 국·공유지 및 대학부지에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건립되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행복기숙사**

○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제1항제4호의2

○ **(실적) 총 10개 사업**(운영 3개, 설계·공사 중 7개), 수용인원 약 8,500명
※ 국립대학교: 부경대학교(1, 2차), 대구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재원) 사학진흥기금 100%**(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 **대학 의무부담 없음**

○ **(융자)** 3년 거치 27년 상환(대주: 재단, 차주: SPC*) / **연 1.572%****(고정금리)**
* 재단이 전액 출자하여 기 설립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임
** '23년도 지원사업부터는 재단 운영비 충당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상될 수 있음

○ **(구조)** 민간투자 **BTO방식**(Build Transfer Operate)

SPC가 무상 제공 받은 대학부지에 **기숙사 준공**(Build)과 동시에 **소유권을 대학에 이관**(Transfer)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운영**(Operate)하면서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행복기숙사(연합) 사업 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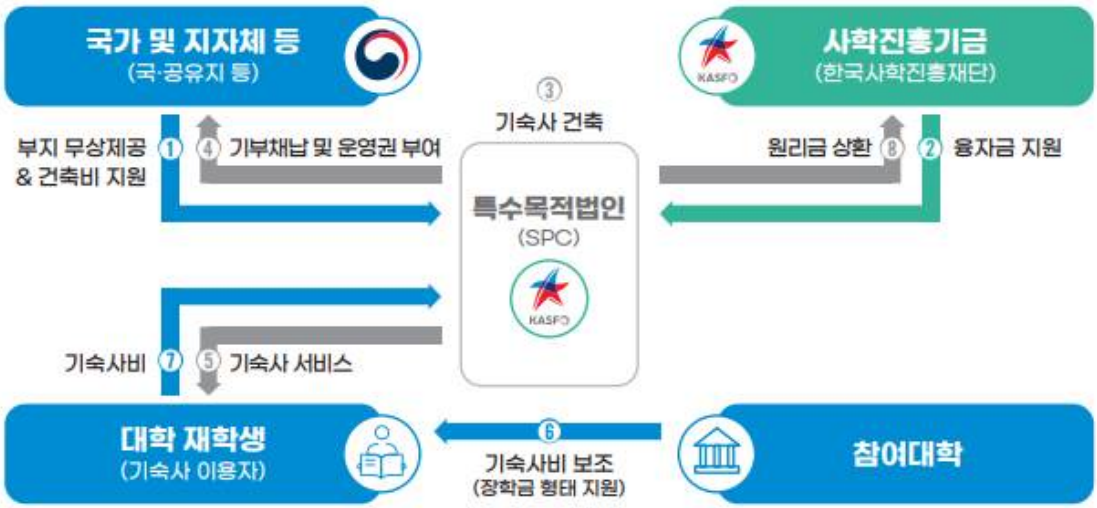

□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사업개요

○ **(사 업 명)**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사업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캠퍼스 內)

○ **(건립규모)** 지하 1층 ~ 지상 15층 1개동 / 연면적 18,000㎡

○ **(주요시설) 사생실 및 편의시설**(체력단련실, 열람실, 세미나실 등)

○ **(수용규모) 906명 내외**(인천대학교 학생: 80% / 타 대학 학생: 20%)

※ 타 대학 학생 비율은 일반적으로 30% 수준이나, 대학요청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 **(수용형태) 1인실**(270실, 수용인원 30%) 및 **분리형 2인실**(318실, 수용인원 70%)로 구성

< 행복기숙사 사생실 표준모델(안) >

1인실(4.4py)★적용모델	2인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 변동될 수 있음)	
	분리형(7.9py)★적용모델	기본형(6.5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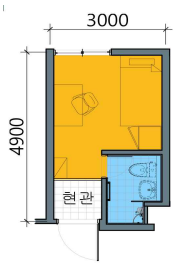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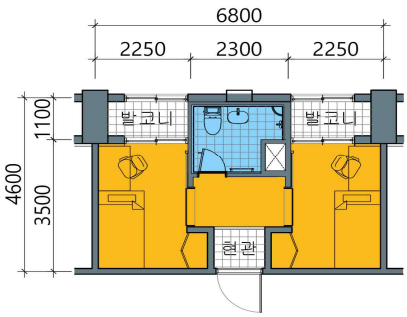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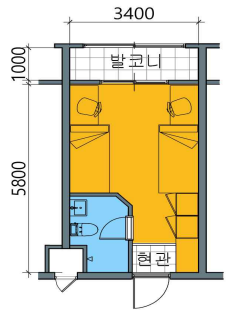

○ **(입주대상)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재학생 우선 모집 후 공실 발생 시 수용인원의 30% 이내 취업준비생 입주 가능

○ **(총사업비) 약 43,629백만원**(부가세 포함)

※ 구성내역: 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설비비 / 제세공과금 / 건설기간 이자 등 건립비용 일체

○ **(기숙사비) 1인실: 350천원**(1인, 월) / **2인실: 280천원**(1인, 월)

※ 최초 기숙사비는 개관 3개월 전에 총사업비 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붙임2】 행복기숙사와 BTL기숙사 비교 및 조세 검토

□ 행복기숙사와 BTL기숙사 비교

구 분	행복기숙사	국립대 BTL	비고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교비 부담	없음	교비 75% (국비 실링제)	
기숙사 비용	월 255천원 ~ 290천원 (1인실 350천원)	월 210천원	2인실 기준
수혜대상	부지제공 국립대 재학생 및 인근 대학 재학생(20%이내)	부지제공 국립대 재학생	인천대 100% 가능
건립비	사학진흥기금 100%	-	
사업방식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관리기간	30년	20년	

□ 조세 검토

종 류		사학진흥재단 법률자문	납부주체 및 부과금액	비 고
국 세	부가세	면세	사업비의 10%	
지방세	취득세	건축물 준공시 : SPC 기부채납시 : 인천대	SPC : 1.050백만원 인천대 : 330백만원	사업비 430억원 적용
	재산세	15/100 학교부담	인천대 : 30백만원/년 추정	

【붙임3】 행복기숙사(연합) 유치 관련 출장 결과 보고 공문

문서번호	캠퍼스기획과-2923
보존일자	20년
보고일자	2022.06.21.

청렴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기안자	팀장급	캠퍼스기획과장	사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박준삼	우인경	김광수	이경두	강현철	06/21 박종태
협 조	생활원장 윤병조 기획예산과장 임승빈				

- 인천대학교-한국사학진흥재단 간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

행복기숙사(연합) 유치 관련 출장 결과보고

2022.06.21.

INU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캠 퍼 스 기 획 과

- 인천대학교-한국사학진흥재단 간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

행복기숙사 유치 관련 출장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 목　　적 :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추진 방향 논의

□ 일　　시 : 2022.6.10.(금) 13:00~15:00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카페

□ 참 석 자

○ 인천대학교 : 캠퍼스기획과 우인정 행정관, 박준상 실무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기숙사사업본부 이시욱 책임행정관, 이진기 차장

Ⅱ 협의내용 및 추진사항

□ **행복기숙사 건립 취지**

○ 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 및 거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추진

○ 우리 대학교는 타 지역 출신 학생 증가와 근거리 주거시설(자취 및 하숙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내 기숙시설 확대 절실

□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 용역명 :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사 : 계영이노베이션

○ 용역기간 : 2021.10.01. ~ 2021.11.14.(45일)

○ 용역목적 :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객관성 확보

○ 용역결과

- 인천대학교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며, 최소수익보장 등 별도의 학교 비용부담 없음

- 국세(부가가치세)는 경우 면제대상이며,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는 15% 납부 가능성이 있음(취득세는 취득 시 1회 납부, 재산세는 매년 납부)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제8호의 3항 의거(일몰규정)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및 제177조의2 의거(일몰규정)

- 장래 수요는 타대학 수요 포함 1,000명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
-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SPC 사업성 확보 가능
- 학생 정주 환경 개선, 학교 장래 발전 측면으로 유치 적정함

Ⅲ 출장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광역시 행복기숙사(연합) 또는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연합)

○ 건립부지 : 제3기숙사 인근 부지

위 치	전 경

○ 수용규모 : 1,000명 내외

○ 건립규모 : 연면적 약 18,000㎡ ~ 22,000㎡(실 구성 및 모델에 따라 다름)

○ 사생실 구성안에 따른 추정 총사업비 및 기숙사비 현황

구 분	수용인원(명)				연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기숙사비(1인, 월) (천원)	
	1인실	2인실		계			1인실	2인실
		일반형	분리형					
ALT 1	-	1,000	-	1,000	18,041	38,802	-	265
ALT 2	-	-	1,000	1,000	21,753	46,199	-	293
ALT 3	300	700	-	1,000	19,957	42,849	344	255
ALT 4	300	-	700	1,000	22,530	48,003	327	290

【조 건】 장애인실 및 공용공간(계단실 및 편의시설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연면적, 총사업비, 기숙사비 추정값은 설계 및 협의·검토과정에서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근 설계 중인 행복기숙사 1인실 설치비율 : (행복도시) 30%, (대구교대) 50%, (서울과기대) 없음

< 사생실 유형별 적용모델(안) >

1인실(14.6㎡)	2인실(일반형_21.6㎡)	2인실(분리형_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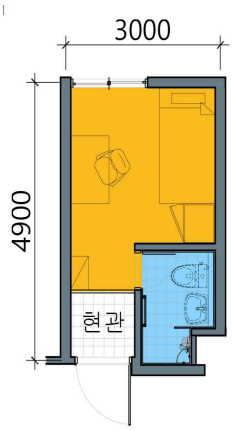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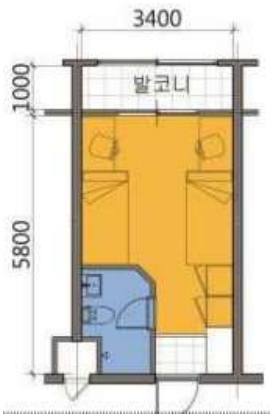 ※ 발코니는 옵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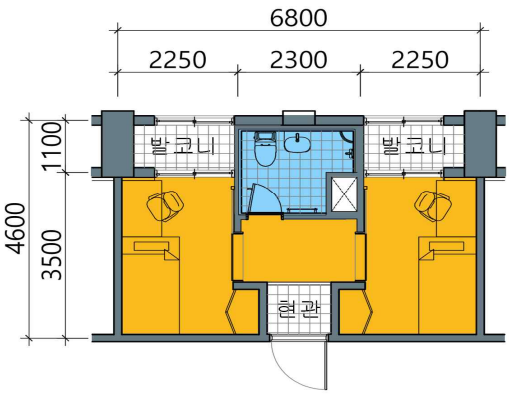

- 주거 트렌드 반영 및 BTL기숙사와 차별성을 갖는 ALT2, 4 추천

- 기타 특약사항으로 총사업비 내 인천대학교 취득세 포함 불가

☐ BTL기숙사와 행복기숙사 비교

구 분	행복기숙사	국립대 BTL	비고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교비 부담	없음	국비지원 75%(출연금) ⇒국비지원총액(실링제)	
기숙사 비용	월 255천원 ~ 290천원	월 210천원	
수혜대상	부지제공 국립대 재학생 및 인근 대학 재학생(30%이내)	부지제공 국립대 재학생	20%하향 조정가능
건립비	사학진흥기금 100%	-	
운영비	-	국비지원 75% + 인천대 부담 25%	
사업방식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관리기간	30년	20년	

☐ 출장자 의견

○ 인천대 재학생 인천·부천지역(강화제외) 50%, 서울과 지방 50%로, 기숙사 수용률을 국공립대 평균치(26.5%)보다 향상시켜 정주대학 특성화 추진

※ 2022년도 기숙사 경쟁률 1.3:1(3,076명 모집 / 3,972명 신청)

○ 기숙사 건설비용 부담이 없는 행복기숙사 유치 필요

○ 대상부지 녹지지역 해제 필요

- 부지면적 : 4,887㎡ (교육시설 1,057㎡ + 녹지 3,830㎡)
- 녹지해제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정책연구원) 환경보전방안검토 필요
- 환경보전방안검토 행정절차 : 약 80일 소요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발주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작성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관련부서 협의	➡	환경보전방안검토
• 기간 : 10일 • 주체 : 캠퍼스기획과		• 기간 : 30일 • 주 체 : 용역사 • 용역비 : 2,200만원		• 기간 : 10일 • 주체 : 경제자유구역청		• 기간 : 30일 • 주체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2016년 8월 제3기숙사 건축시 부지내 녹지(4,481㎡) 해제 승인

○ 주차장 공간 부지 부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선 협의 필요(경제청)

○ 일몰규정(22년 말까지 유효)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위해 2022.12월 이전 실시협약 체결 필요.

○ MOU체결 전 조성규모, 사생실 유형, 기숙사비용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필요.

Ⅲ 향후계획

□ 용역시행

○ 2022.07. : 행복기숙사 환경보전방안검토(녹지해제) 용역 착수

□ 행정사항

○ 2022.07.~08. : 행복기숙사(연합)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 결정

○ 2022.09. : MOU 체결

○ 2022.09.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 심의

○ 2022.11. : 인천대학교 - 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협약 체결

○ 2023.01. ~ 08. : 행복기숙사(연합) 설계 및 건축허가

○ 2023.09. ~ 2025.08. : 행복기숙사(연합) 건설 및 준공

○ 2025.09. : 행복기숙사(연합) 운영

<붙임>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추진절차. 끝.

<붙임>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연합)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요사항
① 행복기숙사(연합) 신규사업 발굴 · 재단이 행복기숙사(연합)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부지소유자에게 사업 제안 · 사업 그룹군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행복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국·공립대, 공공기관 등 파악	- 부지선정
② 사업타당성 검토 및 MOU 체결 · 재단과 부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지 활용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재단과 부지소유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 21년 11월 타당성검토 완료 - 조성규모, 기숙사비용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필요** - **MOU 체결**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 · 재단 기숙사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안) 심의 · 의결 · 재단 이사회 심의 · 의결 후 확정	- 대상부지 **녹지해제 필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녹지해제용역) - 주차관련 **교통영향평가 협의 필요** (경제자유구역청 협의)
④ 특수목적법인(SPC) 설립(1개월) · 특수목적법인(SPC)설립 - 정관 확정 및 재단 단독 출자 SPC 설립(본점에서 사업 추진 시, 설립 불요) ※ 부지소유자 여건에 따라 공동 출자 가능	
⑤ 실시협약 체결 (2개월) · 부지소유자와 SPC 간 실시협약 체결 - 주체별 권리 · 의무, 절차 등 실시협약 체결	- 일몰규정인 조특법 및 지특법 적용을 위해 **22.1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필요**
⑥ 대출약정 체결 및 공공기금 지원 (1개월) · 대주(재단)와 차주(SPC) 간의 대출약정 체결 - 융자금 지급 전 세부 조건 및 절차 등 약정 체결 - SPC의 자금집행요청 후 공공기금 집행	-
⑦ 설계 및 건축허가 (8개월) · 설계 및 건축허가 실시 - SPC 지침에 따라 SPC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 추진 (단, 기숙사를 부지소유자와 복합으로 계획하는 경우 입찰참가조건 등 세부기준은 부지소유자와 협의 가능하며 부지소유자 협조 필수)	-
⑧ 시공업체 공고 및 착공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SPC 지침에 따라 SPC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 추진 (단, 기숙사를 부지소유자와 복합으로 계획하는 경우 입찰참가조건 등 세부기준은 부지소유자와 협의 가능하며 부지소유자 협조 필수)	-
⑨ 시설준공 및 기부채납 · 시설 준공 후 부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 · SPC 관리운영권 취득	-2025년2학기(9월) 개관
⑩ 시설 관리운영 (30년 내외) · 학생 관리 및 시설관리	-
⑪ 관리운영권 반납 · 융자금 전액 상환 후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지소유자에게 반납	-

의안 번호	제2022 - 20호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이 정 두
제출년월일	2022. 8. 18.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의 안 번 호	2022-20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22.12.31. 現 인천대학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천대학교 금고를 지정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방향

❍ **재무경영위원회 의견**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기관 선정**

- 2018년도 재무경영위원회 의견(수정가결)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외부평가위원(6명):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선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1명 선정, 재무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중 추첨을 통해 2명 선정
- 내부평가위원(3명): 재무경영위원회 내부위원 12명이 추천한 인원 중 최종 교원 2명, 직원 1명 선정

② 대학금고지정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 제정

- 2018년도 이사회 의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1】

❍ **인천대학교 금고 취급회계는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로 지정**

- 산학협력단 별도 금고지정 및 협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나. 추진내용

❍ 지정방식 : 공개경쟁방식

❍ 약정기간 : 4년 (2023. 1. 1. ~ 2026. 12. 31.)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은행

❍ 지정회계 :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 예산규모 : 300,985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기준)

※ 법인회계 222,210백만원, 산학협력단회계 78,775백만원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원 : 총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다. 추진절차

총장방침	▶	재무경영 위원회	▶	이사회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금고지정 추진계획 수립 (2022.7.19)		심의 (2022.08.18)		심의·의결 (2022.08.26)		홈페이지·나라장터 (`22.8.29~9.23)		직접 방문 (`22.9.22~23)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	총 장	▶	금고지정 발표	▶	금고약정	▶	인수인계·시스템 구축
제안서 심사·평가 (2022.09.28)		금고지정 (2022.09.29)		홈페이지·선정은행 통지 (2022.09.30)		약정체결·결과보고 (`22.10.4~7)		관계자 협의 (~2022.12.31)

3. 참고사항

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및 제48조

다. **교육부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2022.01.)**

☞ **Ⅴ.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1부

2.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안) 1부

3.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1부

4.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업무위탁 협조 요청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2018년	2022년(안)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2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0)
	- 국외평가 기관	5	5
	- 국내평가 기관	5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0)	(10)
	- BIS 자기자본비율	5	5
	- 고정이하여신비율	3	3
	- 자기자본이익율	2	2
2.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계	20	20
	가. 차입금 적용금리 ※ 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0	5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5	10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5	5
3. 교직원(산학협력단 직원포함)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계	20	20
	가. 대학구성원(학부모 포함) 이용의 편리성	5	5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5	5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5	5
	라. 대학회계 세입금의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5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5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5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5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계	25	25
	가. 본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20	20
	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ERP) 유지운영비 지원		4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계획	5	1

<2022년도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항목 5(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2018년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세부평가 추가 결정사항 반영
   ① 평가항목 자료 미제출(실적없음) 시 **'0' 점 처리**
   ② 세부평가 항목 순위 간 점수편차 비율은 **'10%' 편차적용**
   ③ 정보공개 대상 범위는 **최고점수 은행만 공개**

【붙임2】 2022년도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안)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2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5	1) 국외평가 기관	1)장기신용평가등급	3
				2)단기신용평가등급	2
		5	2) 국내평가 기관 신용평가등급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5	1)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산출값(비율)이 높은 순으로 1순위)		5
		3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산출값(비율)이 낮은 순으로 1순위)		3
		2	3) 자기자본이익율(ROE) (산출값(비율)이 높은 순으로 1순위)		2
2.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계	20			20
	가. 차입금 적용금리 ※ 재무회계규정 제12조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	5	1) 장기차입금 제안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2) 단기차입금 제안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10	1) 12개월 이상		1
			2)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
			4)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5	1)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
			2)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
			3)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
			4) 50억원 이상		1
3. 교직원 (산학협력단 직원포함)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계	20			20
	가. 대학구성원(학부모포함) 이용의 편리성	5	1) 인천관내 영업점 현황 * 점포명은 본점,지점,출장소 순으로 유인점포만 기재 * 농협(수협) 은행 등의 지역조합 구분 표기부분 인정		3
			2) 인천 관내 무인점포 수 * 무인점포, 365일 코너 등 금융거래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현황		2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5	1) 법인카드 및 교직원 복지카드 포인트 적립율 제시 방안		2
			2) 재학생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 시행시 대학 수수료 혜택방안		2
			3) 할부(가맹점)수수료, 무이자 혜택, 연회비, 대학 맞춤형 학생증발급, 부가서비스 등 방안		1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5	1) 정기예금적용금리	1년 이상 제안금리	1
				1년 미만 제안금리	1
			2) 대출적용금리	신용대출 제안금리	2
				주택담보대출 제안금리	1
	라. 대학회계 세입금의 납부편의 증진방안	5	1)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1
			2)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 증진방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1
			3)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 대비 운영대책		1
			4) 금고업무 전반에 대한 대책 및 부가서비스 추진 계획 등		2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5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	5	1) 등록금 등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	2
			2) 현재 개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 현황 및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세입세출 업무 및 자금 관리업무의 발전방향	3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5	1) 국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 수)	2
			2) 금고운영시 조직·인력 등 운영 및 신설 계획(출장소장외 은행창구 전담인력 3명배치)	3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1)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방안 등	2
			2) 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연계처리 방안	2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및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1
5. 대학에 대한기여 및 협력 사업추진 능력	계	25		25
	가. 본 대학과의 협력사업 계획	20	대학의 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배점 (대학발전기금은 현금 출연만 인정)	20
	나. 산학협력단 유지운영비 지원	4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ERP) 유지운영비 지원	4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 계획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배점	1

[항목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등급별 평가기준)

가. 본 대학과의 협력사업 계획

구 분 \ 배 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발전기금 기부금액	20억원 초과	18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억원

※ 14억원 미만은 입찰참가 불가

나. 산학협력단 유지운영비 지원

구 분 \ 배 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 (ERP)유지운영비	2.3억원 초과	2.2억원 초과 ~ 2.3억원 이하	2.1억원 초과 ~ 2.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2.1억원 이하	2억원

※ 2억원 미만은 입찰참가 불가 ☞ 연구관리시스템 연 54백만원(2022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소요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제안 계획

구 분 \ 배 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집행금액	2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미만

【붙임3】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재무회계팀-3862
보존일자	5년
보고일자	2022.07.19.

청렴한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기안자	재무회계팀장	사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최윤희	장서은	代 이승철	강현철	07/19 박종태	
협 조	연구처장 김규원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2022.07.19.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재 무 회 계 팀

2022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 2022.12.31. 現 인천대학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하여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천대학교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1 추진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및 제48조

○ **교육부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2022.01.)**

☞ **Ⅴ.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2 대학금고 현황

○ 現 금고 : 신한은행

○ 약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 (4년)

○ 지정대상 :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 지정방식 : 공개경쟁

○ 입찰참여 : 2개 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3 그 동안 추진경과

○ 법인화 이전 : 2009년도

- 인천시 관련조례에 따라 시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농협 '10.1.1.~14.12.31.)

- 법인화 이후: 2014년도(농협) / 2018년도(신한)

총장방침	▶	재무경영위원회	▶	이사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	총 장
금고지정 추진계획 수립		심의		심의·의결		제안서 심사·평가		금고지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재무경영위원회·이사회 확정

II 2022년도 대학금고 추진방침

1 추진방향

○ **재무경영위원회 의견**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기관 선정**

- 2018년도 재무경영위원회 의견(수정가결)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외부평가위원(6명):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선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1명 선정, 재무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중 추첨을 통해 2명 선정

· 내부평가위원(3명): 재무경영위원회 내부위원 12명이 추천한 인원 중 최종 교원 2명, 직원 1명 선정

② 대학금고지정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 제정

- 2018년도 이사회 의결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지1】

○ **인천대학교 금고 취급회계는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로 지정**

- 산학협력단 별도 금고지정 및 협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업무위탁 협조 요청(붙임1)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및 「인천대학교 금고운영지침」 제정**

- 2018 재무경영위원회 의견에 따라 금고지정 관련 근거마련

2 추진 주요내용

○ **지정방식 : 공개경쟁**

- 「인천대학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사 후 최고득점 은행을 우선지정대상으로 총장이 지정
-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 순위 은행과 약정체결 진행

○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지정회계** :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 예산규모 [2022년 본예산기준]

구 분	총 계	법인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비고
예산액	**300,985백만원**	222,210백만원	78,775백만원	

○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과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예치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은행 : (붙임2) 참조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지1】
-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 【별지2】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 인원 : 총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인원 6명)
- 내부위원은 재무경영위원회 교직원 중 교원 6명, 직원 3명을 추천받아 후보자로 하고, 무작위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은행의 번호추첨 방법으로 교원 2명, 직원 1명을 선정
- 외부위원은 각 후보자 중 무작위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은행의 번호추첨방법으로 선정
  - ▸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1명씩 선정
  - ▸ 인천시의회 시의원 중 3명을 추천 받아 1명 선정
  - ▸ 재무경영위원회 외부위원 7명을 추천 받아 2명 선정

<table>
<tr><th colspan="5">내부위원 3명</th><th colspan="5">외부위원 6명</th></tr>
<tr><th>추 천
위원회</th><th>대상자</th><th>추천
인원</th><th>번호
부여</th><th>선정
인원</th><th>추천
기관·단체</th><th>대상자</th><th>추천
인원</th><th>번호
부여</th><th>선정
인원</th></tr>
<tr><td rowspan="5">재무경영
위 원 회
내부위원
(13명)</td><td rowspan="5">교직원</td><td rowspan="3">교원
6명</td><td rowspan="3">①
↕
⑥</td><td rowspan="3">2명</td><td>변호사회</td><td>변호사</td><td>3명</td><td>①
↕
③</td><td>1명</td></tr>
<tr><td>회계사회</td><td>공 인
회계사</td><td>3명</td><td>①
↕
③</td><td>1명</td></tr>
<tr><td>세무사회</td><td>세무사</td><td>3명</td><td>①
↕
③</td><td>1명</td></tr>
<tr><td rowspan="2">직원
3명</td><td rowspan="2">①
↕
③</td><td rowspan="2">1명</td><td>재무경영
위 원 회</td><td>외부
위원</td><td>7명</td><td>①
↕
⑦</td><td>2명</td></tr>
<tr><td>인천시의회</td><td>시의원</td><td>3명</td><td>①
↕
③</td><td>1명</td></tr>
</table>

○ **재무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 금고지정 방식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금고지정 관련 사항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개최일시 : 2022. 9. 28(수)
- 위원임기 :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 위촉시기 : 보안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개최일 임박하여 위촉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서면보고)
- 위촉통보 : 위촉장 수여를 생략하고 전언으로 개별 통보

○ **위원회 역할**

-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진행**

- 위원장 선출 :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정족수 확인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안서 심의 및 평가 등**

- 제안서 평가(채점)
  - ▸ 확정된 세부평가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채점)
  - ▸ 배부된 제안서에 따라 각 위원별 심의표 작성
- 심사결과 의결(확정)
  - ▸ 각 위원별 서명한 심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
  - ▸ 제출된 위원별 심의표를 집계표에 이기 후 위원장 확인
  - ▸ 은행별 집계표를 각 위원이 개별 확인 서명 후 의결로 확정
- 위원장이 서명한 은행별 집계표를 총장에게 제출
- 비공개로 심사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금고지정 추진일정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2. 08. 29.(월) ~ 9. 23.(금) (26일)**
- 공고내용 : 금고지정 신청 공고안 (붙임3 참조)
- 공고방법 : 나라장터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 **관계서류 열람**

- 열람기간 : 공고기간 내
- 열람장소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팀 사무실
- 열람서류 : 2019~2021년도 결산서, 2022년도 예산서 등

○ **제안서 접수 및 번호 추첨**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2. 09. 22.(목) ~ 09. 23.(금) (2일간)**
- 서류제출 :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10부(원본 1, 사본 9)
- 추첨일시 : 2022. 09. 26.(월) 10:00 (*추첨 전에 명부작성)
- 접수 및 추첨장소 :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재무회계팀(301호, 307호)
- 추첨방법 : 입찰참가 은행의 직원이 무작위 부여된 후보자 번호 추첨
  ※ 번호추첨 후 은행관계자 입회하에 봉인해제하고 담당자는 원활한 금고심의를 위하여 세부평가 항목 중 정량지표 요약서 작성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 09. 28.(수)**

○ **금고지정 결과 발표 : 2022. 9월중**

- 발표일자 : 금고를 지정한 후 3일 이내
- 발표방법 : 학교 홈페이지 및 선정 은행 통지

5 금고약정 체결

○ 체결일정 : 지정된 은행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약정대상 : 금고로 지정된 은행

○ 약정방법 : 약정서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약정서 문안 기재사항

- 각종 법령의 준수의무, 등록금 수납의 송금 및 이체
- 배상 및 변상 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의 해석, 유효기간
- 계약종료 후 업무 인수인계 등

6 금고업무 인계인수 (필요시)

○ 인계인수 : 약정체결일 ~ 2022. 12. 31.

- 전산시스템 준비 및 확인
- 인수은행과의 합동근무 및 제반 추진사항 협의

○ 금고업무 개시 : 2023. 01. 01.

Ⅲ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8,620천원 범위내**

- 산출내역

구분	사용내역	예산액(천원)
기타운영비	◦ 심사수당 : 500,000원 × 9명 = 4,500천원 ◦ 속 기 비 : 230,000원 × 4시간 = 920천원	5,420
행사비	◦ 회의장 대관료 1,300천원 ◦ 식사비용 800천원 ◦ 편의시설 사용료 600천원 ◦ 다과비용 500천원	3,200
합 계		8,620

- 예산과목 : 관리운영비, 기본운영비, 학사행정지원, 기타운영비/행사비

※ 상기 산출내역은 예정금액으로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심사수당 책정 근거**

- 이사회 운영 규정 제17조(경비지원 등) 준용
- 위촉위원 1인당 500,000원 지급

※ 내부위원이 재무경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경우 미지급

Ⅳ 향후 추진계획

○ 금고지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2.07.19.(화)	▸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방침 수립 총장 결재
2022.08.11.(목)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2022.08.26.(금)	▸ 이사회 심의·의결
2022.08.29.~09.23.	▸ 금고지정 공고 ▸ 입찰참가 은행 관계서류 열람
2022.09.22.~09.23.	▸ 금고업무 제안서 접수
2022.09.26.(월)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후보자 번호 추첨
2022.09.27.(화)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22.09.28.(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22.09.30.(금)	▸ 금고지정 발표 및 선정 은행 통지
2022.10.04.~10.07	▸ 금고지정 약정 체결 및 보고
약정체결일 ~ 2022.12.31.	▸ (금고 변경시) 인수인계에 따른 관계자 협의 ▸ 금고업무 인수인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및 금고운영지침 제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2.07.19.(화)	▸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방침 수립 총장 결재
2022.07.20.~07.26.	▸ 의견조회
2022.07.27.~08.01.	▸ 사전심사 의뢰
2022.08.11.(목)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별지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2018년	2022년(안)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2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0)
	- 국외평가 기관	5	5
	- 국내평가 기관	5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0)	(10)
	- BIS 자기자본비율	5	5
	- 고정이하여신비율	3	3
	- 자기자본이익율	2	2
2.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계	20	20
	가. 차입금 적용금리 ※ 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0	5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5	10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5	5
3. 교직원(산학협력단 직원포함)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계	20	20
	가.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 이용의 편리성	5	5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5	5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5	5
	라. 대학회계 세입금의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5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5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5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5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계	25	25
	가. 본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20	20
	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 (ERP) 유지운영비 지원		4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계획	5	1

<2022년도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항목 5(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2018년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세부평가 추가 결정사항 반영
   ① 평가항목 자료 미제출(실적없음) 시 **'0' 점 처리**
   ② 세부평가 항목 순위 간 점수편차 비율은 **'10%' 편차적용**
   ③ 정보공개 대상 범위는 **최고점수 은행만 공개**

【별지2】 2022년도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안)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2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5	1) 국외평가 기관	1)장기신용평가등급	3
				2)단기신용평가등급	2
		5	2) 국내평가 기관 신용평가등급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5	1)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산출값(비율)이 높은 순으로 1순위)		5
		3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산출값(비율)이 낮은 순으로 1순위)		3
		2	3) 자기자본이익율(ROE) (산출값(비율)이 높은 순으로 1순위)		2
2.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계	20			20
	가. 차입금 적용금리 ※ 재무회계규정 제12조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	5	1) 장기차입금 제안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2) 단기차입금 제안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10	1) 12개월 이상		1
			2)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
			4)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5	1)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
			2)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
			3)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
			4) 50억원 이상		1
3. 교직원 (산학협력단 직원포함)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계	20			20
	가. 대학 성원(학부모포함) 이용의 편리성	5	1) 인천관내 영업점 현황 * 점포명은 본점,지점,출장소 순으로 유인점포만 기재 * 농협(수협) 은행 등의 지역조합 구분 표기부분 인정		3
			2) 인천 관내 무인점포 수 * 무인점포, 365일 코너 등 금융거래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현황		2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5	1) 법인카드 및 교직원 복지카드 포인트 적립율 제시 방안		2
			2) 재학생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 시행시 대학 수수료 혜택방안		2
			3) 할부(가맹점)수수료, 무이자 혜택, 연회비, 횃불이 맞춤 학생증발급, 부가서비스 등 방안		1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5	1) 정기예금적용금리	1년 이상 제안금리	1
				1년 미만 제안금리	1
			2) 대출적용금리	신용대출 제안금리	2
				주택담보대출 제안금리	1
	라. 대학회계 세입금의 납부편의 증진방안	5	1)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1
			2)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 증진방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 등)		1
			3)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 대비 운영대책		1
			4) 금고업무 전반에 대한 대책 및 부가서비스 추진 계획 등		2

항 목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5		15
	가. 세입 · 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	5	1) 등록금 등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세입·세출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	2
			2) 현재 개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 현황 및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세입세출 업무 및 자금 관리업무의 발전방향	3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5	1) 국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 수)	2
			2) 금고운영시 조직 · 인력 등 운영 및 신설 계획(출장소장외 은행창구 전담인력 3명배치)	3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1) 금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방안 등	2
			2) 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연계처리 방안	2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및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1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 사업추진 능력	계	25		25
	가. 본 대학과의 협력사업 계획	20	대학의 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배점 (대학발전기금은 현금 출연만 인정)	20
	나. 산학협력단 유지운영비 지원	4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ERP) 유지운영비 지원	4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 계획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배점	1

[항목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등급별 평가기준)

가. 본 대학과의 협력사업 계획

구분 \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발전기금 기부금액	20억원 초과	18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억원

※ 14억원 미만은 입찰참가 불가

나. 산학협력단 유지운영비 지원

구분 \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 (ERP)유지운영비	2.3억원 초과	2.2억원 초과 ~ 2.3억원 이하	2.1억원 초과 ~ 2.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2.1억원 이하	2억원

※ 2억원 미만은 입찰참가 불가 ☞ 연구관리시스템 연 54백만원(2022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소요

다.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제안 계획

구분 \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집행금액	2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미만

□ **붙임자료**

1. 산학협력단 업무위탁 협조요청 공문 1부.
2. 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은행 현황 1부.
3. 금고지정 신청 공고(안) 1부.
   - 금고지정 신청 및 제안서 작성안내 1부.
   - 각서 1부.
   - 사용인감확인서 1부.
   - 위임장 1부.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서류
   - 심의위원 추천서 1부.
   - 심의위원 승낙서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5.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6. 「인천대학교 금고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붙임4】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업무위탁 협조요청

산 학 협 력 단

수 신 사무처장(재무회계팀장)
(경유)
제 목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업무위탁 협조 요청

『1. 산학협력사무국-7993(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금고 지정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 선정 업무를 위탁 요청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위탁 요구사유**

가. 사유

- 과거 산학협력단 주거래은행과 인천대학교 금고가 달라 외부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출납 사무 업무 등 시간과 업무지연으로 행정인력의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인천대학교 금고 지정 시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 평가항목 중 대학발전기금 출연에 인천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동일한 금고 선정으로 인천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現 주거래은행 현황

가. 주거래은행 : 신한은행

나. 약정기간: 2020.11.23.~ 2022.12.31.(약 2년 1개월)

다. 약정서 이행사항

구분	총 금액	비고
소계	**300,000,000원**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0,000,000원	매년 12월 31일 입금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ERP) 운영지원비	100,000,000원	

◉ **업무위탁 요구사항**

가. 現 약정서 이행사항 반영

나. 평가항목 적용

항목	세부항목
1. 금융기관의 대내 ·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 국내평가 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항목	세부항목
2. 산학협력단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차입금 적용금리 ※ 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3. 산학협력단 직원 이용의 편리성	가. 산학협력단 직원 이용의 편리성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라. 산학협력단 출납사무 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본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ERP) 유지운영비 지원**

※ 연구관리시스템(ERP) 유지 운영비 : 연 54백만원(2022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요청

끝.』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임행정원 김민애 사무국장 직무대행 이윤호 산학협력단장 07/15 김규원

협조자

시행 산학협력사무국-7719 (2022.07.15.) 접수 재무회계팀-3795 (2022.07.15.)

우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http://www.inu.ac.kr

의안 번호	제2022 - 21호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이 정 두
제출년월일	2022. 8. 18.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안 번 호	2022-21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2018. 09. 27일자 재무경영위원회 개최 시 「2018년도 인천대학교 금고지정 추진계획(안)」 관련 대학금고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38조(수납기관)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나. 수납사무 등 금고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인천대학교 재무 회계규정」 제38조의 2(금고 업무 약정)**를 **추가**하여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및 제48조
- **교육부「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2022.01.)**
  ☞ **Ⅴ.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추진일정

- 총장 방침 : 2022. 07. 19.(화)
-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 2022. 07. 20.(수) ~ 8. 1.(월)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 08. 18.(목)

규정 제 호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총장은「은행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법인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④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천대학교 금고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제38조의2(금고 업무 약정)**① 총장은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 ·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등 법인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④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천대학교 금고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의안 번호	제2022 - 22호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이 정 두
제출년월일	2022. 8. 18.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의 안 번 호	2022-22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사무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38조의2 제4항에 의거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천대학교 금고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범위 (안 제3조)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학협력단회계의 금고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금고의 수, 약정기간, 지정방법 (안 제4조~제6조)	▸금고의 수 : 단일금고 ▸약정 기간 : 4년 ▸지정 방법 : 경쟁입찰
금고지정 기준 및 평가 (안 제7조)	**▸금고지정의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대학교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직원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인천대학교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 : 총 9명으로 구성(외부인원 6명, 내부위원 3명) **▸심의위원회 역할**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정절차 및 금고약정 (안 제9조)	▸총장은 금고지정방식 결정 후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및 금융기관별 심의표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면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약정을 체결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추진일정

- 총장 방침 : 2022. 07. 19.(화)
-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 2022. 07. 20.(수) ~ 08. 01.(월)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 08. 18.(목)

지침 제 호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 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대학교 금고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 총장이 인천대학교 소관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지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법인회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법인회계를 말한다.
3. 금고지정: 금융기관 중 인천대학교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약정: 총장과 인천대학교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장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학협력단 회계의 금고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모두 취급할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고의 수) 법인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무응찰 및 단독응찰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기준 및 평가) ① 금고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대학교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직원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인천대학교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위한 별도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별표의 평가항목 중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총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1.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선정
2. 인천시의회에서 시의원 중 3명을 추천 받아 1명 선정

3. 재무경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중 7명을 추천 받아 2명 선정
4. 재무경영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교원 6명을 추천 받아 2명 선정, 직원 3명을 추천 받아 1명 선정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지정절차 및 금고약정) ① 총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경쟁입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약정을 체결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취급업무, 각종 법령·규정·지침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총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

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 기관	5	
	- 국내평가 기관	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0)	
	- BIS 자기자본비율	5	
	- 고정이하여신비율	3	
	- 자기자본이익율	2	
2. 대학 자금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계	20	
	가. 차입금 적용금리	5	
	※ 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10	
	다. 수시 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5	
3. 교직원 및 재학생 이용의 편의성	계	20	
	가. 대학구성원(학부모포함)이용의편리성	5	
	나. 신용카드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 평가	5	
	다. 정기 예·적금, 대출 적용금리	5	
	라. 대학회계 세입금의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계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계	25	
	가. 본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20	
	나.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계획 등	5	

※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를 포함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항목 5의 세부항목에 산학협력단 유지운영비 지원을 추가할 수 있음.(이 경우 배점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시스템 유지운영비 지원 4점,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제안계획 1점으로 부여)

의안 번호	제2022 - 23호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서정현
제출년월일	2022. 8. 18.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2022-23

제출일자 : 2022. 8. 18.
제 출 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가.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법인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세입·세출을 편성하여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인천대학교 정관 제23조 제2항 제2호

나.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호

(붙임)

○ 2022년도 법인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부

2022년도 제2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편성방향

○ 2021년도 법인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 연구형 대학체계구축을 위한 신임교원 연구환경 지원 경비 반영
○ 2022년도 신규 재정지원사업비 반영
○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편성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규모 : 244,28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7% /15,4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44,281	228,839	15,442	6.7%

3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 (요약)

1.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규 모 2회추경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주요 증감사유
합 계	244,281	228,839	15,442	6.7	
등록금수입	62,103	62,117	-14	0	- 교환학생 등록금 수입 (증 47백만원) - 수강료 수입 (공자,어학센터) (증 10백만원) - 계약학과 등록금 수입 (감 72백만원)
출연금, 보조금	141,519	140,302	1,217	0.9	- 성립전경비(7건) (증 1,101백만원) - 그 외 보조금 사업(대학운동부평가 등) (증 116백만원)
전입 및 기부금	14,692	9,290	5,402	58.1	- 발전기금 전입금 등 (증 5,402백만원) 【R&D콤플렉스 건립, 제2도서관 ICT 비품 등】
교육부대 및 교육외수입	2,672	2,604	68	2.6	-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 등 (증 49백만원) - 선급법인세 환급금 (증 19백만원)
고정자산매각대	31	5	26	510	- 불용물품 매각대금 (증 26백만원)
이월금	14,685	6,000	8,685	144.8	- 전년도 이월금 (본예산편성액 제외) (증 8,685백만원)
수입대체경비	8,580	8,521	59	0.7	-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증 111백만원) - 최고위과정 수입 등 (감 52백만원)

2.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규 모				주요 증감사유
	2회추경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244,281	228,839	15,442	6.7	
인건비	93,049	92,229	820	0.9	- 직원 명예퇴직금 (증 820백만원)
관리운영비	10,444	9,915	529	5.3	- 제물포역 역명부기 사업비 (증 189백만원) - 입학식 등 행사비 (증 87백만원) - 신임교원연구실 행정비품비 (증 36백만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증 31백만원)
학사 및 교육운영	39,806	36,916	2,890	7.8	- 제물포캠퍼스 개발사업 추진 (증 1,005백만원) - 국책사업 대응자금 (증 643백만원) - K-MOOC 사업비(성립전) (증 158백만원) -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사업비 (증 153백만원) - 경영학부 정원 감축 지원비 (증 100백만원) - 대학 현안사업 지원 시설비 (증 100백만원)
교육인프라 구축	49,536	39,761	9,775	24.6	- R&D 콤플렉스 건립비 (증 4,995백만원) - 지하공간 양성화 및 통합서버실 구축 (증 2,009백만원) - 바이오해양 클러스터관 건립비 (증 1,010백만원) - 제2도서관 ICT 및 가구 구입비 (증 403백만원) - 신임교원 교육연구기자재 구입비 (증 400백만원) - 5,8호관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증 180백만원)
우수인재 양성	43,555	42,433	1,122	2.6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성립전) (증 586백만원) -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증 501백만원)
재무활동	66	0	66	100.0	- 인천시 장기차입금 이자비용 (증 66백만원)
평생교육 지원	370	279	91	32.6	- 해양교육프로그램 사업비(성립전) (증 86백만원)
수입대체 경비사업	6,198	6,157	40	0.7	-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 (감 37백만원) - 한국어교육센터 운영비 (증 77백만원)
예비비	1,259	1,150	108	9.4	

4 세입 · 세출예산 편성 총괄 세부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율 (%)
계	244,281	100.0	228,839	100.0	15,442	6.7
등록금수입	62,103	25.4	62,117	27.1	-14	0.0
학부등록금수입	51,224	21.0	51,176	22.4	47	0.1
학부등록금 수입	51,176	20.9	51,176	22.4	-	0.0
교환학생 등록금수입	47	0.0	-	0.0	47	0.0
대학원등록금수입	9,848	4.0	9,848	4.3	-	0.0
대학원입학금 수입	332	0.1	332	0.1	-	0.0
대학원등록금 수입	9,516	3.9	9,516	4.2	-	0.0
계약학과등록금수입	594	0.2	666	0.3	-72	△10.8
계약학과입학금 수입	-	0.0	5	0.0	-5	△100.0
계약학과등록금 수입	594	0.2	661	0.3	-67	△10.1
수강료 수입	437	0.2	427	0.2	10	2.4
단기수강료	338	0.1	338	0.1	-	0.0
INU어학센터 수강료	66	0.0	57	0.0	8	15.4
공자학원 수강료	34	0.0	33	0.0	1	3.8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141,519	57.9	140,302	61.3	1,217	0.9
출연금수입	106,503	43.6	106,503	46.5	-	0.0
정부출연금 수입	106,503	43.6	106,503	46.5	-	0.0
보조금수입	35,016	14.3	33,799	14.8	1,217	3.6
보조금 수입	35,016	14.3	33,799	14.8	1,217	3.6
전입 및 기부금수입	14,692	6.0	9,290	4.1	5,402	58.1
전입금 수입	14,238	5.8	8,840	3.9	5,398	61.1
산학협력단 전입금	500	0.2	500	0.2	-	0.0
교내 타회계 전입금	13,738	5.6	8,340	3.6	5,398	64.7
기부금 수입	454	0.2	450	0.2	4	0.9
지정기부금 수입	450	0.2	450	0.2	-	0.0
지원금 수입	4	0.0	-	0.0	4	100.0

예산과목	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율 (%)
교육부대 및 교육외 수입	**2,672**	**1.1**	**2,604**	**1.1**	**68**	**2.6**
대학원입시수입	69	0.0	69	0.0	-	0.0
대학원입시 수입	69	0.0	69	0.0	-	0.0
기타 교육부대 수입	254	0.1	205	0.1	49	23.9
기타 교육부대수입	254	0.1	205	0.1	49	23.9
교육외 수입	1,585	0.6	1,566	0.7	19	1.2
예금이자 수입	450	0.2	450	0.2	-	0.0
사용료 수입	569	0.2	569	0.2	-	0.0
기타 교육외 수입	566	0.2	547	0.2	19	3.5
수익재산 수입	764	0.3	764	0.3	-	0.0
재산운용 수입	764	0.3	764	0.3	-	0.0
고정자산 매각수입	**31**	**0.0**	**5**	**0.0**	**26**	**510.0**
유형자산 매각	31	0.0	5	0.0	26	510.0
유형자산매각대	31	0.0	5	0.0	26	510.0
이월금	**14,685**	**6.0**	**6,000**	**2.6**	**8,685**	**144.8**
전기이월 자금	14,685	6.0	6,000	2.6	8,685	144.8
전기이월자금	14,685	6.0	6,000	2.6	8,685	144.8
수입대체경비사업	**8,580**	**3.5**	**8,521**	**3.7**	**59**	**0.7**
공개강좌	198	0.1	250	0.1	-52	△21
최고위과정 수입	198	0.1	250	0.1	-52	△21
입시운영	912	0.4	912	0.4	-	0.0
입시 수입	912	0.4	912	0.4	-	0.0
논문심사	110	0.0	110	0.0	-	0.0
논문심사 수입	110	0.0	110	0.0	-	0.0
기숙사운영	4,625	1.9	4,625	2.0	-	0.0
생활원 수입	4,625	1.9	4,625	2.0	-	0.0
스포츠센터	1,843	0.8	1,843	0.8	-	0.0
스포츠센터 수입	1,843	0.8	1,843	0.8	-	0.0
일반수입대체	892	0.4	781	0.3	111	14.2
일반수입대체 수입	222	0.1	222	0.1	-	0.0
평생교육원 수입	553	0.2	553	0.2	-	0.0
INU어학센터 수입	117	0.0	6	0.0	111	1850.0

2. 세출예산(안)

[사업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율 (%)
계	244,281	100.0	228,839	100.0	15,442	6.7
인건비	93,049	38.1	92,229	40.3	820	0.9
인력운영비	93,049	38.1	92,229	40.3	820	0.9
교원보수	67,429	27.6	67,429	29.5	-	0.0
직원보수	25,620	10.5	24,800	10.8	820	3.3
관리운영비	10,444	4.3	9,915	4.3	529	5.3
기본운영비	10,444	4.3	9,915	4.3	529	5.3
부서운영비	192	0.1	194	0.1	△2	△1.1
학사행정 지원	10,252	4.2	9,721	4.2	531	5.5
학사 및 교육운영	39,806	16.3	36,916	16.1	2,890	7.8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25,849	10.6	23,512	10.3	2,337	9.9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	6,682	2.7	6,618	2.9	64	1.0
강의환경 조성 지원	9,599	3.9	9,622	4.2	△23	△0.2
사이버강의시스템 운영	222	0.1	117	0.1	105	90.4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26	0.0	26	0.0	-	0.0
특성화 및 대학정책 연구지원	3,473	1.4	2,111	0.9	1,361	64.5
융합연구비 지원	12	0.0	12	0.0	-	0.0
우수 연구인력 지원	27	0.0	27	0.0	-	0.0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	3,687	1.5	2,971	1.3	717	24.1
공동기기원 운영	676	0.3	615	0.3	61	9.9
계약학과 운영	444	0.2	492	0.2	△48	△9.8
대학 현안사업 지원(공통)	1,000	0.4	900	0.4	100	11.1
취업 지원	3,095	1.3	3,042	1.3	53	1.7
취업지원 운영	1,554	0.6	1,538	0.7	16	1.1
취업특강 운영	24	0.0	24	0.0	-	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00	0.2	600	0.3	-	0.0
진로취업교과목 운영	36	0.0	30	0.0	6	21.6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688	0.3	661	0.3	27	4.1
선예원 운영	23	0.0	23	0.0	-	0.0
CPA반 운영	57	0.0	57	0.0	-	0.0
학생생활상담소 운영	98	0.0	97	0.0	1	0.8
INU 인권센터 운영	14	0.0	12	0.0	2	16.8

예산과목	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율 (%)
학생활동 지원	3,365	1.4	3,122	1.4	243	7.8
학생활동 지원	2,911	1.2	2,687	1.2	224	8.3
학생생활 지도	185	0.1	182	0.1	3	1.8
사회봉사센터 지원	214	0.1	199	0.1	15	7.5
장애학생센터 지원	55	0.0	54	0.0	1	1.9
국제화 지원	2,053	0.8	1,806	0.8	248	13.7
해외교류 지원	174	0.1	146	0.1	28	19.1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인턴 지원	640	0.3	640	0.3	-	0.0
외국인 교환학생 지원	649	0.3	580	0.3	69	12.0
외국인 유학생 지원	264	0.1	117	0.1	147	126.4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326	0.1	323	0.1	3	1.0
대학혁신 지원	5,443	2.2	5,434	2.4	9	0.2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5,443	2.2	5,434	2.4	9	0.2
교육인프라 구축	**49,536**	**20.3**	**39,761**	**17.4**	**9,775**	**24.6**
정보화 지원	5,370	2.2	4,968	2.2	403	8.1
도서기반 확충	3,394	1.4	2,992	1.3	403	13.5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645	0.7	1,645	0.7	-	0.0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	331	0.1	331	0.1	-	0.0
실험실습운영 기반 확충	3,808	1.6	3,410	1.5	398	11.7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483	1.4	3,088	1.3	395	12.8
실험실 안전관리	325	0.1	322	0.1	3	0.9
캠퍼스 지원	40,357	16.5	31,383	13.7	8,975	28.6
시설물 유지관리	36,473	14.9	27,499	12.0	8,975	32.6
기숙사 유지관리	3,884	1.6	3,884	1.7	-	0.0
우수인재 양성	**43,555**	**17.8**	**42,433**	**18.5**	**1,122**	**2.6**
복지 지원	41,442	17.0	41,442	18.1	-	0.0
장학금 확충 지원	41,442	17.0	41,442	18.1	-	0.0
우수학생 유치지원	690	0.3	104	0.0	586	565.9
대학원 입시운영	80	0.0	80	0.0	-	0.0
대학 입시운영	24	0.0	24	0.0	-	0.0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운영	586	0.2	-	0.0	586	100.0
대학 홍보	1,423	0.6	887	0.4	536	60.4
대학 이미지 홍보	1,350	0.6	814	0.4	536	65.9
홍보 기념품 제작	51	0.0	51	0.0	-	0.0
홍보 대사 운영	22	0.0	22	0.0	-	0.0
재무활동	**66**	**0.0**	**-**	**0.0**	**66**	**100.0**
보전지출	66	0.0	-	0.0	66	100.0
차입금이자상환	66	0.0	-	0.0	66	100.0

예산과목	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율 (%)
평생교육지원	**370**	**0.2**	**279**	**0.1**	**91**	**32.6**
평생교육 활성화	370	0.2	279	0.1	91	32.6
평생교육원 운영	101	0.0	15	0.0	86	576.4
INU어학센터 운영	76	0.0	72	0.0	4	5.0
공자학원 운영	193	0.1	192	0.1	1	0.6
예비비	**1,259**	**0.5**	**1,150**	**0.5**	**108**	**9.4**
예비비	1,259	0.5	1,151	0.5	108	9.4
예비비	1,259	0.5	1,151	0.5	108	9.4
수입대체 경비사업	**6,198**	**2.5**	**6,157**	**2.7**	**40**	**0.7**
공개강좌	136	0.1	173	0.1	△37	△21.3
최고위과정 운영	136	0.1	173	0.1	△37	△21.3
입시운영	896	0.4	896	0.4	-	0.0
입시 운영	896	0.4	896	0.4	-	0.0
논문심사	110	0.0	110	0.0	-	0.0
논문지도 및 심사	110	0.0	110	0.0	-	0.0
생활원운영	3,047	1.2	3,047	1.3	-	0.0
제1기숙사 운영	435	0.2	435	0.2	-	0.0
제2기숙사 운영	1,256	0.5	1,256	0.5	-	0.0
제3기숙사 운영	1,334	0.5	1,334	0.6	-	0.0
게스트하우스 운영	22	0.0	22	0.0	-	0.0
스포츠센터운영	1,290	0.5	1,290	0.6	-	0.0
스포츠센터 운영	1,290	0.5	1,290	0.6	-	0.0
일반수입대체	719	0.3	642	0.3	77	12.0
일반수입대체 사업	112	0.0	112	0.0	-	0.0
평생교육원 운영(수입대체)	477	0.2	477	0.2	-	0.0
INU어학센터 운영	77	0.0	-	0.0	77	100.0
국제계절학기 운영	53	0.0	53	0.0	-	0.0

5 예산총칙

제1조(예산규모) 2022년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4,280,825천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계속비) 계속비 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24,428,082천원으로 한다.

제5조(예비비) 예비비는 1,258,525천원으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다.

6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구 분	재 원	총 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 고 (변경사유)
캠퍼스 기획 안전과	바이오·해양 클러스터관	연면적 6,583㎡ (지하1층,지상4층)	기존 (A)	계	19,900	960	3,100	6,700	9,140	**연도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 투입시기 변경** ※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른 선제 대응
				국비	13,930	0	1,100	4,700	8,130	
				교비	5,970	960	2,000	2,000	1,010	
			변경 (B)	**계**	**19,900**	**960**	**3,100**	**7,710**	**8,130**	
				국비	**13,930**	**0**	**1,100**	**4,700**	**8,130**	
				교비	**5,970**	**960**	**2,000**	**3,010**	**0**	
			증감 (B-A)	계	0	0	0	1,010	△1,010	
				국비	0	0	0	0	0	
				교비	0	0	0	1,010	△1,010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구 분	재 원	총 사업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 고 (변경사유)
캠퍼스 기획 안전과	R&D COMPLEX관 건립	연면적 7,920㎡ (지하1층, 지상5층)	기존 (A)	계	26,625	2,500	8,840	15,285	**연도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 투입시기 변경** ※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른 선제 대응
				국비	13,790	0	3,500	10,290	
				교비	12,835	2,500	5,340	4,995	
			변경 (B)	**계**	**26,625**	**2,500**	**13,835**	**10,290**	
				국비	**13,790**	**0**	**3,500**	**10,290**	
				교비	**12,835**	**2,500**	**10,335**	**0**	
			증감 (B-A)	계	0	0	4,995	△4,995	
				국비	0	0	0	0	
				교비	0	0	4,995	△4,995	